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590 재산세(주택분)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진안군수
변 론 종 결	2019. 10. 2.
판 결 선 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정기분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8,16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원고에게 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합계 64,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원고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1. 처분의 경위

가. 전북 진안군 B 대 372㎡의 소유관계

1) 전북 진안군 B 대 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1. 11. 원고의 처인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친자인 D는 2009. 1. 12.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피고는 2009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 163.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주택),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연월	세목	세액(원)	납부일
2009년 7월	재산세(주택)	6,940	2009. 7. 27.
	지방교육세	1,380	
	합계	8,320	
2010년 7월	재산세(주택)	7,150	2010. 7. 19.
	지방교육세	1,430	
	합계	8,580	
2011년 7월	재산세(주택)	7,080	2011. 7. 22
	지방교육세	1,410	
	합계	8,490	
2012년 7월	재산세(주택)	6,980	2012. 10. 9.
	지방교육세	1,390	
	합계	8,370	
2013년 7월	재산세(주택)	6,860	2014. 11. 21.
	지방교육세	1,370	
	합계	8,230	
2014년 7월	재산세(주택)	7,140	2014. 7. 21.
	지방교육세	1,420	
	합계	8,560	
2015년 7월	재산세(주택)	7,180	2016. 3. 25.
	지방교육세	1,4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합계	8,610	
2016년 7월	재산세(주택)	7,140	2016. 7. 18.
	지방교육세	1,420	
	합계	8,560	
2017년 7월	재산세(주택)	6,850	2017. 7. 20.
	지방교육세	1,370	
	합계	8,220	
2018년 7월	재산세(주택)	6,800	미납
	지방교육세	1,360	
	합계	8,160	

다. 원고의 불복

1) 원고는 201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D가 아닌 거주자인 원고에 대하여 2008년~2017년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기납부한 재산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재산세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하여 2005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인 원고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9. 1. 4.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D이고, 피고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D에게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중복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중복 부과하여 수납한 재산세 상당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9. 3. 26.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8. '원고는 2019. 1. 4.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2019. 3. 29.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처인 C이 2009. 1. 12. D에게 이 사건 주택과 토지 4건을 함께 매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D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2) 피고는 2009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을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 ·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때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 · 수익 · 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97. 11. 11. 원고의 처인 C에게 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여한 후 D가 2009. 1. 12. C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당초 원고의 소유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는 2009. 2.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9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9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만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판사 황윤정

판사 김범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끝.